|  |  |  |
| --- | --- | --- |
|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기준 인하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  發改價格[2012]3882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질량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각 성 및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와 물가국, 재정청(국):  기업과 사회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관련 요구에 따라 일부 행정사업성 요금기준을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아래의 요금기준을 인하한다.  (1)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檔案) 보관비, 중앙 국가기관 소속 인재서비스기구 및 原 인사부의 자격인정 단위에서 수취하는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 보관비 기준을, 현행 개인이 위탁 보관하는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 비용은 건당 매월 15위안에서 10위안으로 인하하며, 단위에서 위탁 보관하는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는 건당 매월 20위안에서 12위안으로 인하한다. 단위나 개인이 위탁하는 단순한 인적서류 보관은 건당 매월 5위안에서 3위안으로 인하한다. 3년 후에는 스스로 취소된다.  인사 관계 및 인적서류 보관비 기준을 인하한 후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격, 재정부서는 국가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은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각급 인재서비스기구의 요금기준을 다시 제정해야 하며, 현행 요금기준이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는 인상하지 못한다.  (2) 출입국 검사검역비의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요금방식을 간소화 한다. 화물 검사검역비 중 품질검사, 동물임상검역, 식품현장검역, 동식물제품검역, 식품 및 식품가공설비 위생검사, 위생검역(요금 불수취)을 병합시켜 화물 검사검역비 1개 항목으로 수취하며, 누적 요금수취를 취소한다. 동시에 다음의 규정을 취소한다. 가. 1회 물량의 화물 검사겸역비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80%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나. 변경 출입항 매회 화물의 가치가 10만 미만(10만 위안 포함)인 소액의 변경무역 검사검역비는 70%에 따라 수취하며, 매회 가치가 인민폐 5만 위안(5만 위안 포함) 이하인 소액 변경무역 검사감역비는 50%에 따라 수취한다.  ② 화물 검사겸역비 요금기준을 인하한다. 가. 화물 검사검역비를 종전에 각각 화물 총가치의 1.5‰, 1.2‰에 따라 수취하던 것을 화물 총가치의 0.8‰에 따라 1차적으로 수취한다. 그중 매질토(Medium soil), 식물유는 화물 총가치의 0.67‰에서 0.3‰로 하향 수취하며, 적은 물량의 식품은 화물 총가치의 4‰에서 0.8‰로 하향 수취한다. 나. 변경 출입항의 매회 가치가 인민폐 10만 위안(10만 위안 포함)이하인 변경 소액무역, 대만 간의 소액무역화물의 검사겸역비 요금기준은 일괄적으로 매회 30위안으로 줄여 수취한다. 다. 위생검역만 실시하는 경우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③ 자원 상품, 즉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 실시 출입국상품목록> 중 제26장(광사, 슬래그, 아쉬)의 모든 상품과 액화천연가스(HS코드: 2711110000), 천연가스(상품코드: 2711210000), 석유원유(상품코드: 2709000000)의 화물 검사겸역비는 종가법에 따라 수취하는 것을 종량 정액으로 수취한다. 그중 제26장(광사, 슬래그, 아쉬)의 모든 상품은 톤당 0.6위안 수취하고 액화 천연가스(상품코드: 2711210000), 석유원유(상품코드: 2709000000)는 톤당 0.08위안 수취한다.  (3) 생산기업의 기 생산 약품등기비는 품종당 50위안에서 30위안으로 줄어서 수취하며, 병원의 제제에 대해서도 품종당 50위안에서 30위안으로 줄여서 수취한다.  2. 상술한 행정사업성 요금기준을 인하한 후 유관 요금수취부문과 단위에서는 규정에 따라 전에 <요금허가증>을 발급한 가격주관부서에 가서 <요금허가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각급 재정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부서와 단위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그 업무의 정상적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3. 각 지역과 유관부서는 엄격히 이 통지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인하하기로 공포한 행정사업성 요금기준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각급 가격, 재정부서는 이 통지의 실시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요금기준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과 아울러 책임자의 행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상기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전의 규정이 이 통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이 통지에 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12년 12월 11일 |  | **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  **关于降低部分行政事业性收费**  **标准的通知**  发改价格[2012]3882号  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质检总局、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发展改革委、物价局、财政厅（局）：  为了减轻企业和社会负担，促进经济稳定增长，根据国务院有关要求，决定降低部分行政事业性收费标准。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一、降低下列收费标准  （一）人事关系及档案保管费，中央国家机关所属人才服务机构以及原人事部认定资质的单位收取的保管人事关系及档案收费标准，由现行的个人委托保管人事关系及档案每份每月15元降为10元；单位委托保管人事关系及档案由每份每月20元降为12元；单位或个人委托单纯存档由每份每月5元降为3元。三年后自动取消。  人事关系及档案保管费标准降低后，各省、自治区、直辖市价格、财政部门应按照不高于国家规定标准的原则，重新制定本地区各级人才服务机构的收费标准。现行收费标准低于国家规定标准的，不得提高。  （二）出入境检验检疫费，具体调整方案如下：  1、简化收费方式。将货物检验检疫费中的品质检验、动物临床检疫、植物现场检疫、动植物产品检疫、食品及食品加工设备卫生检验、卫生检疫（不收费）合并为货物检验检疫费一项，取消累计收费。同时取消以下规定：（1）同批货物检验检疫费超过5000元，超过部分按80%计收；（2）边境口岸每批次价值在人民币10万元以下（含10万元）的小额边境贸易检验检疫收费，按70%计收；每批次价值在人民币5万元以下（含5万元）的小额边境贸易检验检疫收费，按50%计收。  2、降低货物检验检疫费收费标准。（1）货物检验检疫费由原来的分别按货物总值的1.5‰、1.2‰分别计收，降为按货物总值的0.8‰一次性收取；其中,介质土、植物油由按货物总值的0.67‰降为0.3‰收取；小批量食品由按货物总值的4‰降为0.8‰收取。（2）边境口岸每批次价值在人民币10万元以下（含10万元）的边境小额贸易、对台小额贸易货物检验检疫费收费标准，统一降为按每批次30元收取。（3）仅实施卫生检疫的，不收费。  3、资源类商品，即《出入境检验检疫机构实施检验检疫的进出境商品目录》中第二十六章（矿砂、矿渣和矿灰）的所有商品和液化天然气（商品编码2711110000）、气态天然气（商品编码2711210000）、石油原油（商品编码2709000000）的货物检验检疫费，由从价计征改为从量定额收取。其中，第二十六章（矿砂、矿渣和矿灰）的所有商品按每吨0.6元收取；液化天然气（商品编码2711110000）、气态天然气（商品编码2711210000）和石油原油（商品编码2709000000）按每吨0.08元收取。  （三）已生产药品登记费，对生产企业由每个品种50元降为30元；对医院制剂由每个品种50元降为30元。  二、上述行政事业性收费标准降低后，有关执收部门和单位要按规定到原核发《收费许可证》的价格主管部门办理《收费许可证》变更手续。各级财政部门要按照相关规定，妥善安排有关部门和单位预算，确保其工作正常开展。  三、各地区和有关部门要严格执行本通知规定，对公布降低的行政事业性收费标准，不得以任何理由拖延或者拒绝执行。各级价格、财政部门要加强对本通知落实情况的监督检查，对不按规定降低收费标准的，按有关规定给予处罚，并追究责任人员的行政责任。  四、上述规定自2013年1月1日起执行。此前与本通知不符的规定，以本通知为准。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2012年12月11日 |